

**4-1**

##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[지역 인력 양성 지원]

### 1. 사업개요

#### 사업목적

- 전북특구 내 대학의 역량·인적 자원을 활용하여,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 지원

#### 사업내용

-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,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, 지역 특화(전략)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

### 2. 지원내용

#### 2025년 예산규모 : 총 200백만원

- 과제별 지원규모 :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

####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####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이공계열 및 인력·창업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(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) 등 컨소시엄 가능

#### 지원내용

-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, 장비,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(전략)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

- (인력 교육)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·인프라를 활용하여,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, (예비)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\*

\*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

- (인력 활용)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, 예비창업자 육성

- (인력 채용)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,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

####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- 대학,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, 직접비의 5% 계상 가능 (현물,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

####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해당사항 없음

※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 제4조 의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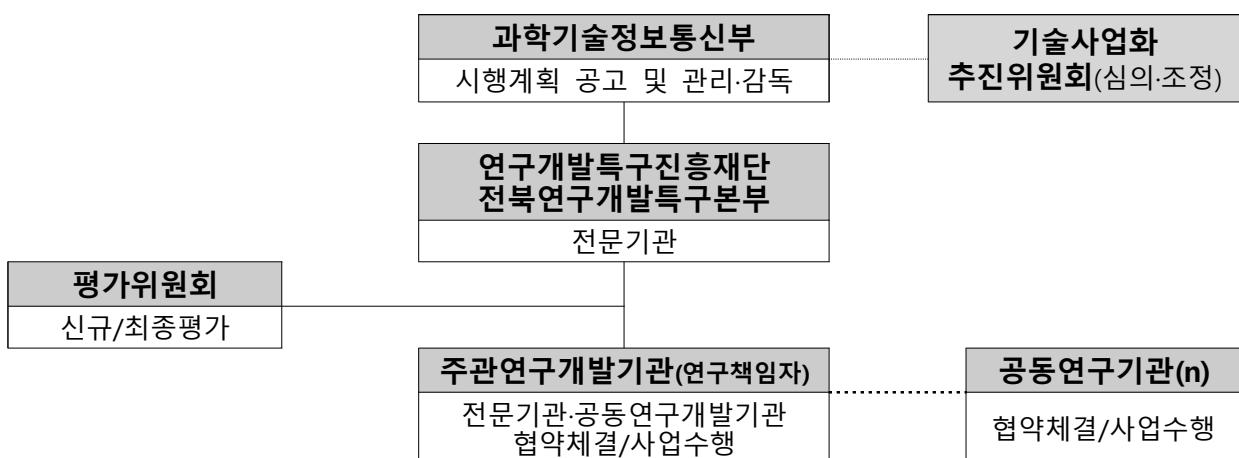
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
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-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 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 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  - 외국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-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 -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: 연구장비 계상 불가

### 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사업 추진체계



## 추진절차



\*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

## 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###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수행기관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(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)에 대한 이해도</li> <li>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</li> </ul>	30
추진계획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</li> <li>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</li> <li>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</li> </ul>	50
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</li> <li>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 파급효과</li> </ul>	20
<b>계</b>		<b>100</b>

\*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\*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 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
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: 해당 없음

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 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21년도~'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택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</li> <li>*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'23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※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</li> <li>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</li> <li>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</li> </ul>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</li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</li> </ul>

## 5. 신청방법 및 절차

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[www.msit.go.kr](http://www.msit.go.kr)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- 연구개발특구포털([www.innopolis.or.kr](http://www.innopolis.or.kr))

- 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접수기간 : 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- 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  -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 (예시파일명: 1.연구개발계획서\_(제출기관명))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O	-	-	압축파일 (한글 PDF 각부)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O	O	O	PDF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O	O	O	PDF
4 (필수)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O	O	O	PDF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서식 3호	O	O	O	PDF
6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O	O	O	PDF
7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('21~'23) 기준 국세청 흠택스 발급분	-	O	O	O	PDF 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
8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O	O	O	
9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5호	해당시	-	-	PDF
10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6호	O	O	O	엑셀(Excel)
11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※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	서식 7호	O	O	O	PDF
12 (필수)	연구윤리 · 청렴 및 보안서약서 ※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	서식 8호	O	O	O	PDF

#### 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,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
 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-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,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
- 문의처(담당부서)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
  - 담당자 : 원종학 연구원([memoret1474@innopolis.or.kr](mailto:memoret1474@innopolis.or.kr)/063-905-9753)

## 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 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 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,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